

법무매거진

감옥에서 또 살인한 무기수... 대법원 “사형 부당하다” 이유는?



이씨는 2019년 12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이후 같은 방에 수감된 40대 수용자에게 폭행을 일삼았다. 이씨는 결국 2021년 12월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은 전례를 찾기 어렵고 짧은 기간에 총 2명을 살해한 점, 이씨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 수감 생활 중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 판단은 사형 선택의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으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사형 선고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에 대한 사형 선고가 부당한 이유 6가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씨는 사건 범행 당시 26세였는데, ‘20대의 나이’라는 사정은 종래부터 다수 판례가 사형 선고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사정 중 하나로 밝혀왔다.”고 했다. 또 폐쇄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채 다른 수용자와 공동생활을 하는 교도소라는 특성이 수용자들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이 “이씨의 살인 고의를 미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방법이 잔혹해 확정적 고의로 살해한 것보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한 데 대해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 내용과 처벌 사이 비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씨의 살해 행위는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미필적 고의 아래 이뤄진 것이며, 피해자가 한 사람이 그쳤다는 점 역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 이씨가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어 유족과 합의를 할 여력이 없는 점, 이씨가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살을 시도한 사정을 고려하면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또 무기징역을 이중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해도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원심이 적시한 양형 사항에는 이씨에게 유리한 정상이 포함돼 있음

에도 원심이 양 측면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불리한 측면만 참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사형제 존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열린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폐지범종교연합 등 종교·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확정된 것은 2016년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마지막이다. 정부는 199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26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국제엠네스티 기준상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사형제는 현재 세 번째로 위헌 심판대에 올라있다. 현재는 지난해 7월 공개 변론을 열고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첨예한 양측 주장을 들었다. 현재는 1996년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2010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가 위헌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석태·이은애·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5명은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히거나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출처/경향신문 & 경향닷컴)